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29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의자 : 조훈현 · 김석기 · 김승희
김정재 · 곽대훈 · 김현아
윤종필 · 金成泰 · 김재경
이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 수익금의 사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u>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u></p> <p><u><신 설></u></p> <p><u>② (생 략)</u></p>	<p>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